

直接投資의 開發效果

—分析 및 政策수립의 方法論的 측면에 관하여—

安錫教*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몇 가지 方法論的 問題들
 - 1. 屢倣效果의 測定
 - 2. 移轉價格(transfer pricing)의 問題
 - 3. 投資條件에 대한 協商의 問題
- III. 綜合的 問題들——結論

I. 問題의 提起

이론上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에 관한 理論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國家間 資本의 移動에 관한 新古典經濟學의 接近方法을 중심으로 하여 直接投資의 移動方向 내지는 그 規模의 決定要因을 규명하려는 작업이고¹⁾ 그 다른 하나는 外國人 企業體 直接投資의 流出·流入 投資母國 및 被投資國의 國民經濟에 어떠한 社會·經濟的效果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규명이다.²⁾

* 漢陽大學校 商經大學 經濟學科 副教授

1) McDougall, G.D.A., *The Benefits and Costs of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in: Dunning, J.H. (ed.), *International Investment*, Penguin 1972.

Stevens, G.V.G., *The Determinants of Investment*, in: Dunning, J.H. (ed.), *Economic Analysis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eorge Allen & Unwin 1974, pp. 47.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i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80 May 1966, pp. 190.

2) Lall, S./Streeten, P., *Foreign Investment, Transnational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Macmillan Press Ltd., London 1977, pp. 6.

Vaitos, C.v., *Intercountry Income Distribution and Transnational Enterprises*, Clarendon Press, Oxford 1974, pp. 8.

Hymer, S.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The MIT Press, Cambridge 1976, pp. 23.

前者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後者에 있어서도 實證的 資料에 의한 객관적 분석에 의하기보다는論者的規範的價値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부論者들의 견해에 따르면多國企業의直接投資는「착취의 무기」(weapon of exploitation)로 간주되는 반면³⁾ 일군의 다른學者들은 이를「開發의使者」(agent of development)로 간주한다.⁴⁾ 後者の 경우에는多國籍企業이 들어오는資本, 經營技法 및 生產技術 그리고 海外市場에 대한情報網과 같은要因들과被投資國에 존재하는生產要素와의 상호補完的關係가 강조된다. 이들의 견해에 의하면 일반적으로資本이 부족하고 產業化에 필요한“software”가 결여되어 있는 후진국에 있어多國籍企業의直接投資는被投資國의資本形成, 雇傭機會의 창출 및 國民經濟의 國際的統合에 기여하거나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被投資國과外國人企業體간投資利益의 배분은「零和」(zero-sum) 게임의 차원에서 파악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前者의 경우에는多國籍企業이 지니고 있는 제반要因들 특히 技術的優位는外國人企業體에게獨占的市場力を 부여함으로써被投資國內에 건전한市場競爭의形成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外國人企業體들이 들어오는要因과被投資國企業간의競爭的關係를 중시한다.

다국적기업直接投資의開發效果에 대한 슘페타적 사고유형과 맙스主義적 주장 사이를 넘나드는 이상과 같은規範的主張이 난무하는原因중의 하나는直接投資의效果에 대한客觀的資料의 부족에 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實證分析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方法論的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배경으로 하여本考에서는直接投資의開發效果를 분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方法論的문제와 그것이 갖는政策的側面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몇 가지 方法論的問題들

1. 雇傭效果의 測定

韓國에서의 외국인 기업체直接投資는 1962年 설립된 미국계열 기업과의合作會社를 효시로 하여 그數에 있어서나 國民經濟의 役割면에서 증가되는 추이를 보여

-
- 3) Hymer, St. H.,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 radical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54~74.
 - 4) Johnson, Harry G., *The Efficiency and Welfare Implic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in: Kindleberger, Ch. P.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A Symposium*, MIT Press 1970, pp.35~56.

왔다.⁵⁾ 1980年 말 현재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체는 合作會社를 포함하여 862個로 총 11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였다. 발표된 統計資料에 의하면 直接投資에 의한 雇傭創出效果는 5人以上의 製造業體에 있어 1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8年 말 현재) 특히 1974~1978사이 외국인 投資企業에 의한 雇傭增加率(年平均 17.1%)은 5인 이상 製造業體의 그것 (12.9%)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 投資企業의 시장전략별로 볼 때 國內市場指向的 企業에 비하여 輸出指向의 外國人企業體는 그 생산방식이 상대적으로 勞動集約의이기 때문에 雇傭效果도 그에 상응하여 크게 나타나 있다.

合作會社를 포함한 外國人企業體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단순히 合算하여 얻어진 그와 같은 推定方法은 이론적으로 볼 때 財貨 및 要素市場에서의 完全競爭이 이루어짐으로써 要素價格이 要素의 限界生產力を 반영하고 要素價格의 수준에 따라 要素移動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같은 推定方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產業間의 構造的 變數를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賃金水準(完全競爭하에서 労動의 限界生產력을 반영하는)이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이 流出해 나온 農業部門에서의 그것보다 높은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은 특히 마산이나 구미 등과 같은 지방의 輸出自由地域에 종사하는 미숙련공의 경우 강하게 제기된다. 만일 이와 같은 질문에 肯定的으로 답할 수 없다면 外形上 혹은 巨視的 集合의 과정에서 얻어진 직접투자의 雇傭效果는 기실 產業間 雇傭의 代替效果일 뿐 이를 「純」雇傭效果로 간주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널리 알려진 루이스 모렐⁷⁾의 경험적 타당성을 分析한 훼이-라네스(Fei-Ranis)⁸⁾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60年代 말을 전후하여 農業部門에서 労動의 限界生產力의 正의 값을 갖게 되는 「商業化點」(commercialization point)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위장신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의 農業部門으로부터의 労動力 流出은 필연적으로 機會費用을 유발함을 뜻한다. 이같은 機會費用은 70年代에 들어서면서 輸出自由地域을 중심으로 한 지방 공업단지 조성이 활발해 지면

5) 經濟企劃院, 外國人 投資白書, 1981, p.39.

6) 前揭書, p.54 참조.

7) Lewis, W.A.,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in: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1954.

8) Fei, C.H./Ranis, G., A Model of Growth and Employment in the Open Dualistic Economy: A Case Study of Korea and Taiwan, in: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Jan. 1975, Nr. 2, pp.32.

서 農業部門으로부터의 勞動力流出이 가속화됨에 따라 上昇하는 추이를 보여왔다.

이상과 같은 外國人 企業體 直接投資의 雇傭機會 창출여부에 대한 가설적 주장이 어느 정도 현실적 정당성을 갖는가 하는 점은 다음의 實證資料가 보여주고 있다.

〈表-1〉 農業部門과 輸出自由地域間의 日當 賃金水準比較(1973—1976)

(단위 : 원)

	1月	6月	10月	年平均
農業部門				
男： 1973	852	896	919	886
1976	1,622	1,978	2,081	1,903 ^a
女： 1973	584	624	655	620
1976	1,130	1,323	1,522	1,354 ^b
輸出自由地域				
男：	—	—	—	1,952 ^c
女：	—	—	—	1,498 ^d
$c-a/a$	—	—	—	0.02
$d-b/b$	—	—	—	0.1

資料：農業部門：農水產部 통계년감, 1977, pp.254. 輸出自由地域：筆者調査

〈表-1〉에 나타난 바와 같이 農業部門에서의 平均 日當 賃金은 男子의 경우 1,900 원, 女子의 경우 1,350원(1976年)으로 輸出自由地域에서의 男子 賃金 1,950원 및 女子 賃金 1,498원과 비교할 때 그 差異가 대단히 근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兩地域에서의 賃金水準이 어느 정도 勞動의 限界生產力を 반영한다고 가정할 때 直接投資에 의한 雇傭機會의 창출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雇傭機會의 단순한 產業間代替效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移轉價格 (transfer pricing)의 問題

被投資國의 資本形成 내지는 合作會社를 포함한 外國人企業體에서의 外貨可得率의 측면에서 볼 때 제기되는 중요한 「이斧」 중의 하나는 이들 기업에서의 「移轉價格」 (transfer pricing)을 파악하는 일이다. 移轉價格의 형성여부 내지는 그 規模에 대한 분석은 나아가서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國家間(投資母國과 被投資國간)에 그리고 外國人企業과 內國파트너 사이에 投資利益의 配分이 얼마만큼 「公正」(fair)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답하기 위한 先決條件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移轉價格이란 외국인기업체의 子會社가 生產에 필요한 投入物(주로 中間財 내지는 部品)의 구매나 製品의 판매에 있어 자유로운 國際競爭市場價格에 의하지 않고 母會社나 母會社가 지정한 업체(예：投資母國의 綜合商社)

로 부터 非競爭市場價格 (other than arm's length prices)에 거래함을 뜻한다. 이때 前者의 경우에는 過多價格 (over pricing)이 後者의 경우에는 過小價格 (under pricing)이 형성될 수 있다.⁹⁾

다국적기업의 移轉價格 형성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分析은 本考의 대상이 아니다.¹⁰⁾ 다만 여기서 論하고자 하는 것은 移轉價格의 형성을 유발하는 요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하다는 점이다. 傳統的인 친해에 의하면 移轉價格의 形成은 外國人企業體에 대한 被投資國의 租稅政策과 같은 政府政策과 합수관계에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60年代 말 南美의 페루나 에콰도르 같은 국가의 경우에는 여타 국가에 비하여 直接投資의 利益에 대한 租稅率이 상대적으로 낮고 配當利益의 송금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移轉價格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다.¹¹⁾ 理論的으로 볼 때에는 外國人企業體에 대한 中立的 政府政策을 가정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母會社의 支出이 自國에서의 賣出額 및 子會社와의 거래를 제외한 外國에서의 賣出額보다 클 때에는 移轉價格를 형성하여 母會社에 投資利益을 송금하는 것이 유리하다.¹²⁾

이제 母會社의 生產費와 技術開發(R & D)에 대한 投資費 및 마아켓팅費 등과 같은 間接費의 합을 C , 母會社의 自國 및 子會社와의 거래를 제외한 해외시장에서의 賣出額을 R 이라 할 때 $R-C < 0$ 의 관계가 상립되는 경우 형성되는 移轉價格은 投資利潤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다. 즉 被投資國과 母國에서의 利潤稅率을 t (이는 政府政策의 中立性을 말함), 被投資國에서의 子會社의 課稅對象 利潤을 Y 라 하면 子會社가 被投資國에 租稅부담 후 母會社에 송금한 후의 母會社의 純益 P_A 는,

$$P_A = R + (1-t) Y - C$$

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移轉價格가 형성되는 경우 母會社의 自國에서의 租稅부담후 純益을 P_B 라 하면,

$$P_B = (1-t) (R + Y - C)$$

가 된다. 따라서 移轉價格의 형성여부 즉 P_A 와 P_B 중 어느 것을 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母會社의 정책은 $P_A \geq P_B$, 내지는

$$R + (1-t) Y - C \geq (1-t) (R + Y - C),$$

9) 예를 들면 過多價格은 $(子會社의 部品도입가격) - (해당부품의 國際市場價格) \cdot 100$ 으로 定義된다.

10) Vaitos, C.v., *Op. cit.*, pp.96.

11) *Ibid.*, p.97.

12) *Ibid.*, pp.99~107.

혹은 이를 줄이면

$$R-C \geq (1-t)(R-C)$$

여부에 좌우될 것이다. 이때 $R-C < 0$ 및 $P_A > P_B$ 의 가정하에서는 $P_A < P_B$ 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해당기업은 移轉價格을 시행함으로써 投資利益을 上昇시킬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移轉價格은 협의의 직접적 生產費뿐만 아니라 國際的 戰略수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費用을 카バー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間接費는 일정기간에 생산된 製品의 量과 무관하다는 의미에서 固定費의 성격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被投資國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多國籍企業이 國際的 經營戰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費用의 어느 정도를 특정 被投資國이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製造部門의 美國系列企業을 그 R & D活動의 2.6%만이 被投資國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나머지 97.4%가 母國에서 행해지고 있다.¹³⁾ 政策的 차원에서 볼 때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兩者간 協商(bargaining)을 통하는 방법이다.

3. 投資條件에 대한 協商의 問題

주치하는 바와 같이 直接投資의 경우에는 投資先에 의한 經營權行使(management control)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間接投資(portfolio-investment)과 구별된다.¹⁴⁾ 經營권은 해당 外國人企業體의 面에서 볼 때 資本의 凡世界的 最適配分을 통한 母企業의 戰術的・戰略的 경영목표(예를 들면 利潤의 극대화, 企業成長 혹은 賣出의 극대화 등과 같은)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특히 合作社社의 경우 外國人企業體 내부에서의 被投資國 企業의 經營참여는 被投資國의 社會・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첫째 經營技法(managerial know-how)의 전수를 통하여 이론바 습체계적 의미의 기업인 양성이 도모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 국가간 直接投資 利益의 분배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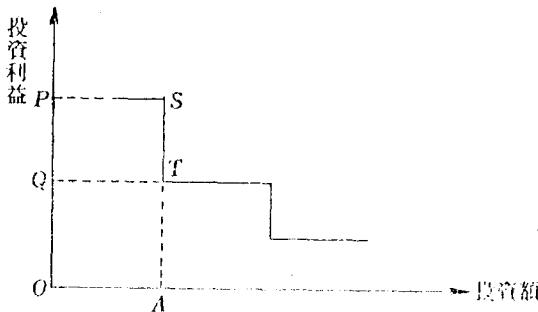
현실적으로 주식비율이나 생산, 재무, 인사, 판매 등과 같은 제반 경영관리에 대한 外形的 組織現況을 기준으로 經營權의 配分關係를 파악하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표는 經營權의 行使를 포착하는 데 있어 많은 경우

13) Pavitt, K.,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the Transfer of Technology, in: Dunning, J.H. (ed.), *Op. cit.*, pp.74~79.

14) Hymer, S.T.,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pp.23.

에 그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經營權의 配分은 그와 같은 株式比率이나 제반 경영관리적에 참가한 內·外國人의 人的組織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¹⁵⁾

前章에서 다룬 바 있는 子社社의 中間財 및 技術의 도입조건이나 經營權의 配分 등을 포함한 전반적 直接投資條件의 형성은 당사자간의 協商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와 협상의 결과는 兩者間 相對的인 힘(bargaining power)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는 [圖一]과 같은 그래프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圖一]

위의 그래프에서 투자이익을 나타내는 곡선이 통상 정동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속적 右下方의 형태가 아니고 굽절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投資額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OA) 그에 상응하는 利益率은 상대방과의 協商을 통하여 可變的(ST영역)임을 보여 준다. 당사자간 投資利益의 배분을 일단은 零和ゲーム(zero-sum game)의 측면에서 판단한 때 被投資國은 S 에서 T 로의 이동을, 外國人企業體는 역으로 T 에서 S 로의 이동을 추구할 것이다. 이때 直接投資를 통하여 해당 外國人企業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投資利益(OP)은 바꾸어 말하면 被投資國의 최대 양보한계를 나타낸다. 被投資國의 양보한계는 直接投資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直接投資가 유발하는 것과 동일한 國民經濟的 效果를 가지오는 이타 代案이 초래하는 부담규모 내지는 直接投資를 거절하는 경우 예상되는 經濟的 費用과 예상利益과의 비교에 의하여 설정될 것이다. 下限線 AT 는 OA 만큼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最小의 投資利益을 나타낸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기업체가 直接投資와 함께 들여오는 要素들(예를 들면 生產技術 및 經營技法과 같은)이 被投資國의 社會·經濟的 發展에 중요하면 할수록, 또 이같은 要素에 대한 市

15) 지청, 外國人企業體 直接投資論, 高大出版社 1976.

16) Streeten, P., Bargaining with Multinationals, in: *World Development*, Vol. 4, No. 3, March 1976, pp. 225~229.

場의 不完全性 즉 獨占的 성격이 강한수록 힘상과정에서 多國籍企業이 被投資國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양보의 한계는 상승할 것이다.

協商과정에서 多國籍企業의 파워가 실제로 얼마만큼 작용하는가 하는 점은 그 파급효과가 예를 들면 칠레의 ITT¹⁷⁾ 같은 경우와 같이 事件化되지 않는 한은 그것을 認知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나 한국의 경우 예를 들면 「化學肥料」產業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계열기업과 合作投資형식으로 설립된 化學肥料會社가 설립초기 政府와 체결한 계약에는 제품의 구매량과 구매가격의 설정방식이 明文化되어 있었다.¹⁸⁾

化學肥料의 정부인수가격은 미국 및 일본에서의 生產者價格, 고배향에서 부산까지의 輸送費 등에 加重值를 주어 算定한 것이었다.¹⁹⁾ 輸入代替產業의 일환으로 육성되어온 肥料產業은 그 「自給自足」이 이루이겼다고는 하나 價格면서 볼 때 진코 國際市場價格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0年代초 作物의 세계적 불황 이후 제3세계는 이른바 「綠色革命」(green revolution)을 추진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으로 失敗에 들어가면서 국제적 肥料需要는 예상보다 저조하여 超過供給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의 肥料價格 상승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는 財政支援을 통하여 肥料의 판매가격을 인도 가격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었으나 그 결과 財政赤字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였고 결국 肥料價格은 74, 75年 두 차례에 걸쳐 급격히 「現實化」되었다.

〈表-2〉 米穀과 肥料간의 交換比

	米價 (원/80kg)	肥料價格 (원/25kg)	80kg米穀과 肥料間의 交換比
1 9 7 3	11,377	749	15.2
1 9 7 4	15,760	974	16.2
1 9 7 5	19,500	1,608	12.1
1 9 7 6	23,200	3,056	7.6

資料： 農協統計年감, 1977, p.41.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次에 걸친 肥料價格의 인상 결과 예를 들면 米價는 1975年的 19,500원에서 1976年的 23,200원 상승한데 반하여 같은 기간 肥料價格은 1,608원에서 3,056원으로 상승함으로써 米價의 上昇率을 훨씬 상회하였다. 그 결과 作物과 肥料의 交換指數는 1975年 12.1에서 1976年에는 7.6으로 급격히 하락

17) Modelska, G.,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Order*, W.H. Freeman and Co., 1976.

18) 지청, 前掲書, p.232.

19) *Ibid.*

하였다. 「不平等契約」의 여파가 결국 최종소비자인 農民에게 귀착됨을 보여주는 이상의 예는 投資條件에 관한 協商에서 나타나는 外國人企業體의 相對的 힘이 초래하는 社會·經濟的 問題를 말해주고 있다.

III. 綜合的 問題들 —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雇傭의 창출, 移轉價格의 형성 및 投資條件과 관련한 힘상의 문제는 直接投資가 유발하는 費用의 측면에 해당하거나와 이들에 대한 보다 體系的 일·분석은 직접투자의 社會·經濟的 役割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先決條件이다. 序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접투자가 生產 및 經營知識의 轉化를 가능케 하고 國民經濟의 國際的 統合이 도모된다라는 등의 背定的 要因은 어니까지나 개연적 성격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巨視的 次元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에서는 直接投資가 유발하는 正의 效果가 부각되는 반면에 本考에서 다룬 바와 같은 성격의 費用 측면은 통한시되는 경향을 갖는다. 그것은 물론 子會社와 母會社간 財貨 및 用役의 거래가 많은 경우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情報의 수집이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費用分析에 대한 方法論的 문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投資利益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수립단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外國人企業과의 協商의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동일한 額의 投資를 유효화시킬 수도 投資國이 얻는 開發利益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協商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相對方에 대한 情報의 파악이 불가결하며 이 같은 情報의 중요성은 특히 子會社의 技術導入의 경우 강조된다. 子會社가 도입하는 技術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기술의 R&D에 대한 投資額에 관한 情報, 둘째 기술도입이 유발하는 예상수입의 現在價值 대가는製品의 市場性(marketability)에 대한 분석, 세째는 도입된 기술의 흡수능력에 대한 中·長期 전망이 주어져야 한다. 도입된 技術의 충돌을 통한 기준의 內國化(indigenization)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기술적 종속(technological dependence)이 불가피하고 이는 經濟的 自立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²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技術情報市場이 불투명하고 獨占的인 要因이 강하기 때문

20) UNCTAD, Technological Dependence, in: Sauvant, K.P./Hasenpflug, H. (e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ampus Verlag, Frankfurt 1977, pp. 265~280.

에 協商에 임하는 被投資國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따라서 Royalty의 지불을 포함한 技術導入條件이 후진국에 不利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²¹⁾

그러나 外國人企業體에 대한 제반 制限的인 조처를 강화함으로써 直接投資의 利益을 提高시키려는 노력은 後進國이 個別的으로 協商을 시도하는 경우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필요한 開發要因을 제공할 수 있는 多國籍企業은 少數인데 반하여 이들 企業을 유치하려는 國家는 多數인 관계로 後者間의 개별적 경합은 外國人企業體에 대한 경쟁적 호혜조건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결국 直接投資의 開發利益을 감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多國籍企業과의 協商에서 有利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後進國이 地域間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는 外國人企業體와의 協商에서 準雙方獨占(quasi bilateral monopoly)을 가능케 함으로써 個別協商時 발생하는 多國籍企業에 대한 一方的獨占이 저지될 것 이기 때문이다.

地域間 공동보조를 통한 被投資國 協商力의 上昇이 直接投資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南美 Andean 國家들의 事例가 좋은 反證이 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 國家들은 공동으로 Calvo-doctrine을 시행함으로써 外國人企業體에 대한 제반 制限的 조처를 단행하였으나 그후 直接投資는 오히려 安定的增加추이를 보여왔던 것이다.

《参考文獻》

지청, 外國人企業體 直接投資論, 高大出版社 1976.

Dunning, J.H. (ed.), *Economic Analysis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eorge Allen & Unwin 1974

Hymer, S.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MIT Press, Cambridge 1976.

—,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 radical approach*, Cambridge, 1979.

21) 베일소스(Vaitssos)에 의하면 안데國家에 투자한 外國人企業體의 기술도입에 있어 약 80%정도가 도입된 技術을 이용한 製品의 輸出을 계한하고 있다. 이를 產業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제 유	88%
의료·제약회사	89%
화 학	78%
식 료 품	73%
기 타	91%

資料 : Vaitssos, C.v., *Op. cit.* p.56.

- Lall, S./Streeten, P., *Foreign Investment, Transnationals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Macmillan Press Ltd., London, 1977.
- MacDougall, G.D.A., The Benefits and Costs of Private Investment from Abroad: A Theoretical Approach, in: Dunning, J.H. (ed.), *International Investment*, Penguin, 1972.
- Sauvant, P./Hasenpflug, H.,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Campus Verlag, Frankfurt, 1977.
- Streeten, P., Bargaining with Multinationals, in: *World Development*, Vol. 4, No.3, March 1976.